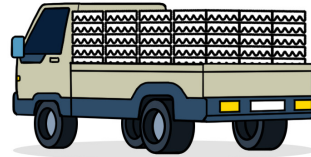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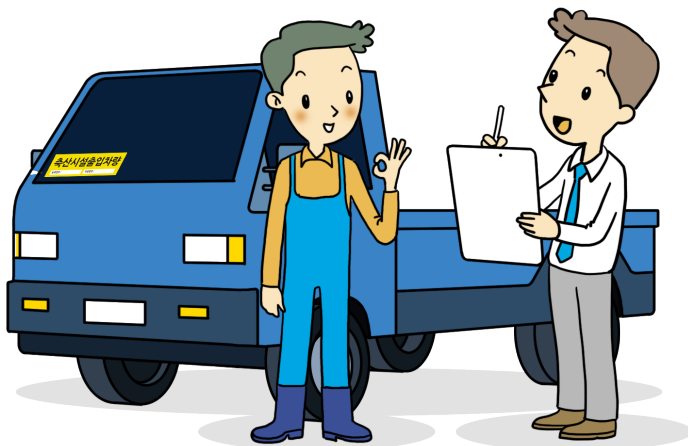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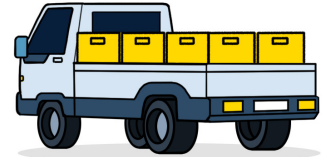


추가 확대되는 축산차량 등록대상은 **2018. 6. 30.**까지 해당 시·군·구에
등록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(GPS)를 장착하고 축산차량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.

축산차량 등록대상이 추가 확대 됩니다.



난좌(계란판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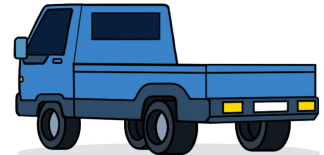
가금부산물



남은 음식물 사료



가금상하차등인력운송



농장화물차

축산차량등록 확대

[확대, 24개 유형]

기존(19개 유형) + 난좌 · 가금부산물 · 남은음식물사료 운반차량,
가금 출하 · 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차량, 농장보유 화물차량

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(예정) : '18.7.1일

[기존, 19개 유형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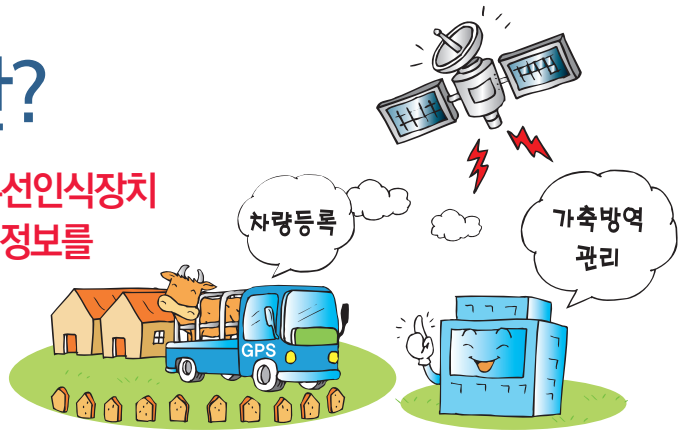
가축·원유·알·동물약품·사료·조사료·가축분뇨·퇴비·왕겨·쌀겨·툽밥·깎짚을 운반하거나 진료·
예방접종·인공수정·컨설팅·시료채취·방역·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

* 축산관계시설 : 가축사육시설, 도축장 및 집유장, 식용란 수집판매업소, 사료공장, 가축시장, 가축검정기관, 종축장,
부화장, 비료공장, 가축분뇨 처리업체

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:  1544-3925

“축산차량 등록제”란?

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**차량무선인식장치 (GPS단말기)**를 장착하여 **축산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·관리**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선진수준의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



① 축산차량 소유자·운전자 유의사항

- 축산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등록 전 3개월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가축방역 등 6시간 교육을 이수
* 보수교육은 교육 수료일 기준으로 매 4년마다 3개월 내에 4시간 이수(온라인교육 가능)
※ 교육관련 문의처(농협중앙회) : 1600-8844
-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(<http://www.farmedu.kr>)
- 축산차량 표지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('18. 9. 30일까지)
- GPS단말기 수령시 즉시 장착하고 운행중 전원을 끄거나 훼손 제거 금지



②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

벌 칙

- **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**
-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
- **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**
-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
-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·제거한 운전자



과태료

- **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**
-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
-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
- 등록사항 변경이나 말소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·말소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
-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않은 소유자



③ 고장·장애시 조치요령

- 차량무선인식장치 고장·장애시
- 「축산차량GPS 운영센터 : 1544-3925」에 즉시 신고합니다.
-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애시 축산시설을 불가피하게 방문한 경우,
「축산차량GPS 운영센터 : 1544-3925」에 지체없이 출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.

고장시 A/S센터 연락처

- SK텔레콤 1599-8764
- KT 070-8656-9930
- LG U+ 1544-9740
010-2787-6313